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437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16. 10. 31.
4. 회부일자 : 2016. 11. 03.

II. 제안이유

- 2016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감소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정원 감축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에 포함하여 규정
-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비서·비서관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지방공무원법」(2013.12.12. 시행) 개정 내용 반영
 - 교육감 비서실 공무원 중 비서·비서관 역할을 하는 일부 공무원의 정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책정

III.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감축(안 제2조): 감 69명
 - 일반직 정원 감축: 감 71명 (6,783명 → 6,712명)
 - 별정직 정원 책정: 증 2명 (0명 → 2명)
-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신설(안 제3조 관련 별표 2)
 - 5급상당 (50% 이내), 6급상당 (50% 이상)
- 연구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보완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의안 별첨
3. 기 타 :
 - 입법예고(2016. 10. 12. ~ 10. 23.) : 의견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37호로 제출되어 2016년 11월 0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2016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감소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정원 감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에 포함하여 규정하며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기준정원 책정시기에 대한 검토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에 따라 현행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¹⁾

보통 연도말 교육감이 제출하는 정원 조례 개정안의 경우는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와 연동하여 교육부가 통보한²⁾ 다음연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기준인원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³⁾

그러나 통상적으로 총액인건비 기준정원의 경우 10월에 예비통보가 이루어지고 최종 확정은 차년도 2~3월경에 이루어지고 있는 바, 교육청이 현재 2017년이 아닌 2016년을 기준으로 총액인건비를 산정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은 2016년도 확정 정원을 규정하려는 정리 성격의 개정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⁴⁾

1) 「2016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확정 산정 통보」(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841, 2016.3.3.)에 따르면 일반 지방공무원은 6,736명, 교육전문직원은 472명으로 총 7,208명임. 이는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총 정원보다 29명이 많은 것으로(일반직 17명, 특정직 12명) 교육부 파견 및 4급 승진 등의 연수에 따른 결원보충 인원을 포함하고 있음.

2) 교육부는 지난 2016년 10월 25일, 「2017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예정산정 통보」에서 총액인건비 산정 내역을 통보한바 있으며(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5136), 동 통보에서 일반직 지방공무원은 6,668명, 교육전문직원은 467명을 예비산정 하였음. 이는 동 일부개정조례안과 비교하여 일반 지방공무원은 48명이 많고, 교육전문직원은 오히려 7명이 적게 산정됨.

3)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난 2013년 11월 4일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도 정원 책정 기준을 2014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에 따라 개정하였음. 그러나 2015년 10월 30일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2015년 총액인건비를 기준인원으로 한 바 있음.

4) 2016년의 경우 교육감의 재의요구로 2015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가 의결한 개정조례가 2016년 7월 7일에서야 확정되었기 때문에 2016년 3월 교육부로 통보된 확정 정원의 반영이 지연된 측면도 있으나, 조례 시행 후 임시회를 통해 확정 정원을 반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됨.

- 그러나 현 시기가 2016년도가 채 1개월도 남지 않는 시점이고 약 3~4개월 후면 바로 2017년 확정 정원을 반영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금번과 같은 정리성 개정은 입법효율성측면에서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숙지하여 조래 개정이 보다 적기에 이루어져 입법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별정직공무원 정원 책정 및 연구직공무원의 일반직 포함에 대한 검토

1) 별정직공무원 정원 책정

- 금번 개정조례안에는 5급 상당 이하 2명의 별정직공무원 정원을 책정하였는바, 별정직공무원 정원은 교육감의 비서인력으로, 금번 정원 책정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다양한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직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별정직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2년 12월 11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만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정의하게 되었고, 이후 2013년 12월 11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고, 2013년 12월 12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예규)이 개정되면서 비서인력과 같은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사항에 대한 통일적인 법령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교육청은 2014년 8월 12일 교육감의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는 비서인력을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는 지난 제256회 임시회('14.9.22)에서 비서인력 채용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비서인력 임용을 위한 별정직공무원 정원 책정 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 바, 이는 그동안 위법상태로 운영되어 오던 정원운영을 적법하게 운영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청이 상위법령 개정 후 위법사항을 상당기간 방치하였다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앞으로 상위법령을 준수하여 적기에 조례의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구직공무원 정원의 일반직 포함

-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그동안 일반직공무원과 구분하여 별도의 정원으로 책정했던 연구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정원에 포함시키는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바, 현재 교육청의 연구직공무원은 정원과 같이 14명으로 모두 연구사로 임용되어 재직하고 있습니다.

[표] 연구직공무원 현황

연구직공무원 구분	기관	정원
학예연구사	정독도서관	1
기록연구사	본청 총무과	2
	교육지원청 11곳	11
계		14

○ 그동안 교육청은 연구직공무원을 별도의 정원으로 구분하였으나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는 일반직공무원을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연구직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연구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정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위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그 밖의 검토사항

○ 그 밖에 [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비교란은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것으로 이미 직급별 정원표에 반영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이고, 개정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의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항에⁵⁾ 따라 교육규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반영해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급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정할 수 있다.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별정직공무원 정원 조정

계급	기관명	직위	정원(명)	정원 조정			비고
				직종	직렬	계급	
5급상당	본청 (공보담당관)	공보담당	1	일반직	교육행정	5급	전담직위
	본청 (총무과)	비상계획 담당	1	일반직 (전문경력관)	-	"가"군 (5급상당)	
6급상당	교육연구 정보원 (교수학습 지원센터)	교육영상물 제작PD	1	일반직 (전문경력관)	-	"나"군 (6·7급상당)	
	정독도서관 (교육박물관)	학예사	1	연구직	학예연구	연구사	전담직위
7급상당	본청 (총무과)	기록관리 전문요원	1	연구직	기록연구	연구사	전담직위
	학생교육원	수련지도관	1	일반직 (전문경력관)	-	"나"군 (6·7급상당)	
	마포평생 학습관	평생교육사	1	일반직 (전문경력관)	-	"나"군 (6·7급상당)	
8급상당	시의회 사무처	속기사	1	일반직 (전문경력관)	-	"다"군 (8·9급상당)	
	본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사	1	일반직	교육행정	8급	임기제 계약직
	학생교육원	수련지도사	4	일반직 (전문경력관)	-	"다"군 (8·9급상당)	
9급상당	교육연구 정보원 (민속박물관)	학예사	1	일반직	교육행정	8급	임기제 계약직
계			14	일반직	3명	5급 1명 8급 2명	
				일반직 (전문경력관)	9명	"가"군 1명 "나"군 3명 "다"군 5명	
				연구직	2명	연구사 2명	

관 계 법 령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 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4. 삭제 <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5.6.22.] [법률 제13335호, 2015.6.22., 일부개정]

제33조(공무원의 배치) ①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6.11.] [대통령령 제25375호, 2014.6.11., 타법개정]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거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 제16조(별정직 정원) ① 별정직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별정직 정원은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교육감이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③ 교육감은 별정직 4급 상당 이상의 정원을 책정(4급 상당 이상의 계급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별정직 정원책정사유 및 임용자격기준을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